

대한민국 헌법

(1987. 10. 29 전부개정)

헌법(憲法)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

헌법의 구조는

전문,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
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개헌, 부칙으로 구성

대한민국 헌법

(1987. 10. 29 전부개정)

헌법(憲法)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1987. 10. 29 전부개정)

헌법(憲法)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

제1장 총강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기본권 구조

헌법(憲法)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22조] 자유권

[23조] 재산권

[24조~25조] 참정권

[26조~30조] 청구권

[31조~36조] 사회권

[37조 2항] 기본권의 제한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2

자유권 (12조-22조)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보장

12조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2

자유권 (12조-22조) - 죄형법정주의

13조

-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연좌제 금지)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2

자유권 (12조-22조) – 자본주의 경제와 밀접한 권리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기초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와 선택한 자유를 마음놓고 행사하는
자유 포함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2

자유권 (12조-22조) – 사생활자유권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 매우 중요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도청 등의 문제는 정치, 언론, 양심의 자유와 연결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 인권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2

자유권 (12조-22조) – 사상의 자유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사상, 양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2

자유권 (12조-22조) – 사상의 자유

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의 현대적 표현

22조

-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3

재산권 (23조)

23조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은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
기존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권 질서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4

참정권 (24조-25조) – 정치적 기본권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간접민주주의 채택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장치가 8조와 24조, 25조의 참정권 조항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모든 선거권, 피선거권은 국민과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음 <-> 제한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적합한가?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5

청구권 (26조-30조) – 청구권적 기본권

26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7조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와 함께 인신의 자유의 주요한 조항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5

청구권 (26조-30조) – 청구권적 기본권

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조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행정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항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6

사회권 (31조-36조) – 교육받을 권리

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6

사회권 (31조-36조) - 노동 3권

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6

사회권 (31조-36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6

사회권 (31조-36조) – 환경권, 아동 및 모성 보호, 보건권

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조

-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7

37조 1항 – 포괄적 기본권

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열거되지 않은 권리들이라도 그것이 단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권리 같은 것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밖에 일조권, 휴식권, 평화적 생존권 등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조항) 1987년

08

기본권의 제한 – 일반적 법률유보조항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국가안정보장과 질서유지는 기본권 존립의 필수조건, 엄격한 해석이 필요
- #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 적용
- # 법률로써 기본권 제한의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해서는 안됨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헌법개정안 주요내용

(2018년, 문재인 정부)

전문

(역사적 사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

기본권 개선

1. 주체 확대(모든 국민 -> 사람)
다만,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국민'으로 한정
2. 기본권 규정형식 변경을 통한 기본권 강화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 규정형식 변경)
3. 노동자권리강화 및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근로->노동, 노동대등결정의 원칙 명시 등)

신설 기본권

1. 생명권과 안전권
2. 정보기본권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3. 성별, 장애 등 차별개선
노력 의무
4. 사회보장(국가시혜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주거권 및 건강권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의 권리강화